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박상인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서회원 간사 02-3673-2141)
- 시행 : 2019.03.11.(총 16매)

경실련,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민생 법안은 빨리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은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3월 임시국회 빨리 처리·철회해야 할 법안 요약

※ 첨부. 3월 임시국회 빨리 처리·철회해야 할 법안

<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개혁·민생법안 >

1.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명	공직선거법 개정	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용	<p>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사표 발생, 소수정당의 과소대표 및 거대정당의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함. 투표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하여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함.</p>		

2. 공수처 설치

법안명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상임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내용	<p>한국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검찰의 봐주기 수사, 표적 수사가 지속하여져 왔으며, 법조비리도 심각함.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권력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함.</p>		

3. 황제경영 방지

법안명	상법 개정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내용	<p>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고, 주주들의 권리도 미약함. 총수 일가의 이해가 달리 사항에 대해 비지배 주주들의 다수결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감사 위원 분리선출에 3% 를 적용,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필요함.</p>		

4. 경제력 집중 억제

법안명	공정거래법 개정	상임위	정무위원회
내용	<p>재벌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p>		

5.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명	집단소송법 제·개정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내용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소송 제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함. 이에 대표당사자에 의한 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을 증권 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또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함		

6. 분양가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법안명	주택법 개정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내용	선분양제에서의 분양가 자율화 정책으로 문지마식 고분양에 의한 주변 집값 상승, 투기조장, 건설사의 불로소득 사유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될 예정이지만 민간은 여전히 분양가 자율화 체제로 분양원가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주택공급의 70% 이상을 민간에서 공급되는 만큼 공공분 아니라 민간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공공은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세부내역의 상시공개도 이루어져야 함		

7. 직접시공제 의무화

법안명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내용	우리나라 재벌건설사나 중소건설사 모두 직접 시공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하도급에 의존함. 이로 인해 건설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최종 하도급자인 건설 노동자와 중장비업자들은 안전사고, 체불, 불법 해고 등에 노출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음. 이에 100억 이상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50% 이상 의무화해야 함.		

8.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건설 확대

법안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내용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이 없어지고 고가 분양아파트 건설로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하고 있음.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율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음. 이에 재개발 임대주택건설비율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재건축 임대주택건설비율 30% 신설해야 함		

<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2대 악법 >

1. 차등의결제 도입 철회

법안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상임위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용	차등의결권을 벤처기업에 도입한다 해도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큼.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경영후계자들이 벤처기업 설립하고, 큰 경영 리스크 없이 증자 등으로 기업 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모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 있음		

2.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허용 철회

법안명	신용정보법 개정안	상임위	정무위원회
내용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 허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경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내용 담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해 이용하고, 개인정보 매매까지 허용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함.		

[첨부]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승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3월 임시국회.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 및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목차〉

〈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
2. 공수처 설치	2
3. 황제경영 방지	3
4. 경제력 집중 억제	4
5. 집단소송법 도입	5
6. 분양가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6
7. 직접시공제 의무화	7
8.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 확대	8

〈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9
2. 신용정보법 개정안	10

2019. 3. 11.

<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 >

1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이른바 승자독식제도임.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거대정당은 득표율보다 과대 대표되는 반면, 소수정당은 득표율보다 과소 대표되는 측면이 있음. 즉, 실제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과 간의 비례성에 격차가 발생.
- 지역구 의원 수와 비교하여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 보니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570여 개 시민사회단체) 및 야 3당은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해왔음. 국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5개의 법률안(김상희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 박주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한 바 있음.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임.

■ 개선방안

-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지지율을 의석으로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1로 전제로, 의원정수는 우선 19대 국회의원 정수인 300인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거나, 혹은 의원정수 확대(360석으로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구체적 재원 마련·특권 폐지 방안이 선결되어야 함. 비례대표 명부작성단위를 권역별로 하되, 중복입후보 및 석폐율제를 불가능하게 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함께 이루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까지 널리 퍼짐.
- 계속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등으로 편향적인 수사행태를 보여 온 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절실함. 공수처는 반부패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자 동시에 검찰개혁의 중요 고리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공직 비리 척결’의 근본적인 개혁만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
-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정치보복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혹은 조사하는 기구를 설치하자는 법률안 5개(노회찬 안, 박범계·이용주 안, 양승조 안, 오신환 안, 송기현 안(정부안))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한 바 있음.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사개특위에 계류 중임.

■ 개선방안

-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인 공수처 설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부패범죄 일반을 관할 범죄 대상으로 해야 함. 공수처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0명, 공수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수처의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총수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음. 아울러 감사 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됨
-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임. 특히 일반 주주, 소수 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견제하기 힘든 구조임.
-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배주주의 통제 속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을 도입해야 함. 이를 통해 총수와 총수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보수, 계열사 간의 기업합병에 MOM Rule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이 33% 미만인 상장회사 이사의 3분의 1이상을 동 제도로 선출함으로써 무력화된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MOM Rule과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없는 상황임. 실효성이 약하기는 하나, 현재 상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법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 나은 상황임.

■ 개선방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종인 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있음. 법안 통과를 통해 미약하기는 하나,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를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 가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지주회사를 특정 기업집단 전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벌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음. 또한,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는 지주회사규제를 받지 않아, 지주회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지주회사제도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되는 허점이 있음. 이러한 사례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와 글로벌비스 합병 시도 사례에도 나타나 있음.
- 따라서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기존순환출자의 해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 도입,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 직접 지분뿐만 아닌 간접지분까지 포함,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사항 삭제 등의 전반적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함.
- 하지만 1년 정도 준비하여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은 실효성 없는 수준으로 나열되어 있음. 그 예로 일감 몰아주기 대상 지분을 직접 지분만 하도록 하고, 전속고발권 또한 경성담합에만 폐지, 지주회사제도 지분율 규제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을 제시하였음.

■ 개선방안

- 정부안으로 제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및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지주회사제도 등의 기업집단법제, 전속고발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 통과시켜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소송 제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함. 모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필요 없이 대표당사자에 의한 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
- 지난 30년간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소송 남발로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매번 무산되었음. 2005년 증권 분야에 우선하여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11건의 소송만 제기되었으며 그중 종결된 건은 3건에 불과함
-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서영교·박영선·박주민·김경협·전해철·이학영 의원 등도 각각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법무부도 지난해 9월 증권 분야에서 제조물 책임, 담합, 부당 광고, 개인정보, 식품, 금융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함
- 경실련도 2017년 11월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소비자,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집단소송 가능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 ▲문서 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내용으로 한 「집단소송법」 제정 법률안을 발의함

■ 개선방안

- 집단소송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되고, 모든 피해에 적용되어야 함.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함.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을 설정하여 재판지연을 방지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제를 1978년부터 도입, 소비자들은 40년 넘게 짓지도 않은 주택을 모델하우스와 광고에 의존해서 구매하도록 강요받아 왔음. 대신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1999년 분양가를 자율화함으로써 선분양의 폐해만 남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음.
- 선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는 원가와 상관없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투기성 불법 전매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집값을 끌어올렸음.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개한 상암 7단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61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공개했음.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어 모든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왔음.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며 민간 아파트는 선분양제-분양가 자율화로 공급되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함.
- 현재 국토부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만 62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임. 하지만 분양주택의 7~80%가 민간 아파트인 만큼 선분양된다면 모든 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바로 과거 분양한 공공아파트에 대해 도급내역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
- 경실련은 2017년 3월에 심상정 의원(정의당)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음

■ 개선방안

- 모든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 설계내역·원하도급 내역·원하도급 대비표 등 인터넷에 투명하게 상시공개
- 선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61개 항목 원가공개
- 기본형 건축비 산정내역 투명한 공개
- 표준주택 및 표준건축비 마련 : 모양(설계도면), 성능과 질(시방서)에 따라 유형별 표준주택을 마련하고 표준건축비 제시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업과 공종별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됨.
- 대부분 재벌건설사 중심의 종합건설업은 원도급자이고, 중소건설사 중심의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자 역할로 정작 재벌건설사, 중소건설사 모두 직접 시공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최근 2018년 12월 업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 2121년부터는 전문건설업도 원도급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나 직접시공제는 아직임.
- 건설산업법에서는 1차 하도급만 허용하지만, 실제 모든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최종 하도급자인 건설노동자와 중장비업자들은 안전사고, 체불, 불법해고 등에 노출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음.
- 남양주 진접선 사고, 톱지호텔 철거사고 등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모두 불법 하도급에 의한 건설노동자들임. 매년 500명 이상의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하는 간접살인을 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직접시공 의무화를 50억 미만 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해 재벌건설사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건설노동자 착취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함.
- 미국에서는 직접 시공하지 않는 건설사를 '브로커'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사업 입찰 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20대 국회에서는 정동영 의원 등이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30% 이상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지역 중소건설사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현장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건설사는 브로커가 아닌 전문시공사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노동자는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아닌 원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불, 누장 지급, 안전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 알선업자(오야지)와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도 줄어들 것임.

■ 개선방안

- 100억 이상 공공사업 직접시공제 50% 이상 의무화 :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100억 이상에 대해 원도급업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실효적 방안이나 공공임대주택 제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함(80만 호, 총 주택 재고의 4% 수준_2016년 기준)
-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주택이 멸실되고 대부분 고가 분양아파트의 건설로 서민의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음.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비율이 미미하거나 규정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최근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지역 세입자의 자살 사건은 정비사업구역 세입자의 주거불안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대폭 상향
 - 현행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은 15%, 재건축사업은 규정 없어 법에서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비율을 상향할 필요성 있음.

■ 개선방안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상향
 -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함.
 - 현행 15%로 규정된 의무건설 비율을 최소 30%까지 상향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고를 확충하여 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함(법 10조 ①항 2조).
-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신설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규정하여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법 10조 ①항 2조).

< 반드시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

1

차등의결제 도입 철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현황과 문제점

- 국회에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황임. 법안에 따르면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하여, 혁신성장을 시킨다고 함.
- 차등의결권은 포이즌 필과 함께 그간 재벌이 전경련을 동원해 도입을 위해 끊임없이 로비해온 재벌 숙원사업임. 따라서 벤처기업에 도입한다고 해도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큼. 즉 벤처기업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재벌 3세와 4세 경영자와 친인척들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음. 결국,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 경영후계자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큰 경영리스크 없이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모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음. 또한, 경영진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견제를 할 수 없게 하여 소액주주와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임.
-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라도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음. 즉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장을 하더라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함.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도 거의 없었음. 결국,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영진, 소유주, 대주주의 방패막이로 작용해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것임. 이로 구축되는 잘못된 지배구조는 기업가치는 물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것임.

■ 개선방안

-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반드시 국회에서 저지, 폐기되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했음.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판매 및 공유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리 목적의 빅데이터 업무 겸영 허용,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목적의 제공 등 개인정보의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용정보는 경제생활과 관련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임. 지난 2014년 발생한 개인신용정보의 대량 유출 사태로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불신을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매매를 법정화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특히 동의 없이 SNS 정보 등을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함. 개인정보 체계와 신용평가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정안을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됨.